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59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2월 28일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하여 대부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(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생략)
- 다. 기 타 : 신·구 조문대비표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 후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위기경보 발령일이 속하는 달의 시작일(2020년 2월 1일)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적용시한)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